

# 소송 당사자도 모르는 판결문 이해하기

글 | 강백용 \_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bykang@sechanglaw.com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등을 기재한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일반인은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는 경우 이 명세서를 통하여 발명의 목적과 구성,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당해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권리의 범위를 파악하여 당해 기술 수준의 동향이나 자기 회사의 특허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명세서는 당해 특허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해석의 자료로 기능할 뿐이어서 그 자체가 법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판단의 기준은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그 판단을 기재한 판결문을 살펴봄으로써만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부 판단의 요체인 판결문은 특허분쟁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판결문의 체제나 용어, 내용 등은 일반인이 다가가기에 그리 녹록지 않은 않다.

## 사건번호 알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은 통상 재판부와 재판의 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주문, 청구취지, 이유, 법관의 서명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법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

허법원 제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와 같이 표시된다. 특허에 관한 소송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이 하나이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을 다루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전자는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반드시 특허법원에만 제기해야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사실상 1심의 기능을 하게 되고, 특허법원은 2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한편, 후자는 일반 민사소송의 하나로 보아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일반법원에 제기하게 되나 재판부의 배당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의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1, 12, 13 민사부 등이 지적재산권 전담부)에는 해당 전담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하게 된다.

재판의 종류에는 크게 판결과 결정, 명령이 있다. 판결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의 경우나 일반법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은 모두 판결의 형태로 선고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결정의 형태로 선고된다.

사건번호는 예를 들어 '2008가합1234', '2008허1234' 등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2008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를, 1234는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중간의 '가합'이나 '허' 등은 당해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가합'이란 민사사건 중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을 말하고, '허'는 특허법원 사건을 말한다. 민사사건은 소가, 즉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1억 원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은 합의부사건(판사 3인 이상이 재판 담당),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판사 1인이 담당)으로 나누어지는데, 합의부사건은 '가합'으로, 단독사건은 '가단'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시를 통하여 최소한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단독재판부가 없고, 모두 합의부이므로 민사와 같이 '합', '단'의 구별이 불필요하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가 되면 '나'로, 상고가 되면 '다'로 표시가 되고, 특허법원 사건이 상고가 되면 '후'라고 표시된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 '고단', '고합' 등으로 표시되고, 2심은 '노'로, 3심은 '도'로 표시된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sch](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sch)).

사건명은 사건의 성격을 간략히 축약된 단어로 표시한 것으로 특허분쟁의 경우 민사사건에서는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지)'나 '침해금지' 등의 사건명이 주로 등장하고, 특허법원 사건에서는 거절결정(특), 등록무효(특)나 권리범위확인(특) 등의 사건명이 주로 등장한다. 손해배상(지)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산)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 또는 피고로 표시되고, 변론종결일은 변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짜를, 판결선고일은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나타낸다.

주문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처럼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소의 결론 부분, 즉 원고가 어떠한 종류, 내용, 범위의 재판을 구하는 가를 간결, 명확하게 표시한 부분을 청구취지라 한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간략,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거절결정(특) 사건의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이 2008. \*\*.\*.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침해금지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위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

주문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하란 소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결격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기각이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며, 인용이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문 다음에는 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근거가 되는 이유가 설시되고, 마지막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다.

### 생소한 용어, 복잡한 구성으로 판결문 난해

그 외 일반인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용어의 생소함, 그리고 판결문 구성의 복잡성 등이 있다. 최근에는 용어 순화작업을 통해서 이해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용어의 경우 쉽게 이해할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만연체의 판결문도 판결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조차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숨겨져 있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주목하면서 판결문을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자주 접하다 보면 멀쩡만 느껴지던 딱딱한 판결문도 다소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구 철도청,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과 다수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